

의안 번호	2287	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8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기금명	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	계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 (라)	
신청사 건립기금	2,071,764,660	6,523,566,300	6,523,566,300	0	8,595,330,960

#### **4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8조

#### **5. 검토의견 : 없음**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